

#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

## 1. 개정이유

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용으로 권고·이용 중인 79~90 kHz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로 분배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,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무선전력전송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~90 kHz 대역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을 마련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술기준의 위임·위탁 규정 조항 개정(안 제1조)

나. 79~90 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 기준 값을 신설(안 제4조제2항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파법 제45조 및 제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◎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- 호

「전파법」 제45조,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-20호, 2016. 9. 27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**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**

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”를 “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전계강도의 허용치)”를 “(전계강도 등의 허용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전계강도의”를 “전계 또는 자계강도의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본문 중 “전계강도”를 “전계 또는 자계강도”로 한다.

4. 79~90 kHz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

주파수	기준 값	비 고
9~150 kHz	27~15 dB $\mu$ A/m  (9 kHz에서 27 dB $\mu$ A/m, 150 kHz에서 15 dB $\mu$ A/m 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)	※ 피시험기와 측정안테나 간 측정거리는 10 m이며, 분해대역폭은 주파수 9~150 kHz에서 200 Hz, 150 kHz~30 MHz에서 9 kHz, 30~1000 MHz에서 120 kHz를 적용하고, 검출 모드는 준첨두 모드를 이용한다.
0.15~4 MHz	14.5~-7.7 dB $\mu$ A/m  (0.15 MHz에서 14.5 dB $\mu$ A/m, 4 MHz에서 -7.7 dB $\mu$ A/m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)	
4~11 MHz	-7.7~-0.2 dB $\mu$ A/m  (4 MHz에서 -7.7 dB $\mu$ A/m, 11 MHz에서 -0.2 dB $\mu$ A/m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)	
11~30 MHz	-0.2~-7 dB $\mu$ A/m  (11 MHz에서 -0.2 dB $\mu$ A/m, 30 MHz에서 -7 dB $\mu$ A/m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)	
30~80.872 MHz	30 dB $\mu$ V/m	
80.872~81.848 MHz	50 dB $\mu$ V/m	
81.848~134.786MHz	30 dB $\mu$ V/m	
134.786~136.414MHz	50 dB $\mu$ V/m	
136.414~230 MHz	30 dB $\mu$ V/m	
230~1000 MHz	37 dB $\mu$ V/m	

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전파법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」 제45조 (기술기준), 제58조(산업·과학·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 이라 한다) <u>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</u>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<u>전계강도의 허용치</u>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전력전송 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<u>전계강도의</u> 최대 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</u> 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<u>전계강도 등의 허용치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전계 또는 자계강도의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79~90 kHz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 일 것</u></p>

주파수	기준 값	비 고
9~150 kHz	27~15 dB $\mu$ A/m  (9 kHz에서 27 dB $\mu$ A/m, 150 kHz에서 15 dB $\mu$ A/m 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)	※ 피시험기와 측정안테나 간 측정거리는 10 m이며, 분해대역폭은 주파수 9~150 kHz에서 200Hz, 150 kHz~30 MHz에서 9 kHz, 30~1000 MHz에서 120 kHz를 적용하고, 검출 모드는 준침 두 모드를 이용한다.
0.15~4MHz	14.5~-7.7dB $\mu$ A/m  (0.15 MHz에서 14.5 dB $\mu$ A/m, 4 MHz에서 -7.7 dB $\mu$ A/m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)	
4~11 MHz	-7.7~-0.2dB $\mu$ A/m  (4 MHz에서 -7.7 dB $\mu$ A/m, 11 MHz에서 -0.2 dB $\mu$ A/m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)	
11~30MHz	-0.2~-7 dB $\mu$ A/m  (11 MHz에서 -0.2 dB $\mu$ A/m, 30 MHz에서 -7 dB $\mu$ A/m이며,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)	
30~80.872MHz	30 dB $\mu$ V/m	
80.872~81.848MHz	50 dB $\mu$ V/m	
81.848~134.786MHz	30 dB $\mu$ V/m	
134.786~136.414MHz	50 dB $\mu$ V/m	
136.414~230 MHz	30 dB $\mu$ V/m	
230~1000 MHz	37 dB $\mu$ V/m	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·과학·의료·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설비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방사되는 기본파의 전계강도 허용치는 두지 아니한다.

-----  
----- 전계 또는 자계  
강도 -----.